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종전 사회적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속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등 **각종 지원(재난지원금 포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나. 기 간 :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13일(일) 24시까지**
 - 다. 주요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1)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 조정된 방역수칙
 - 2)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준수 및 안내
 - 3)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려는 시설의 경우 아래사항 준수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 1)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붙임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1부. 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2/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338 (2022. 2. 21.) 접수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 시설의 경우,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⑤ 음식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사항 준수

15:47:42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p>*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p> <p>**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p> <p>***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p>	

서울특별시

이 문서의 수정·삭제·복합권 2022-02-21 15:47:42